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필모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77

발의연월일: 2020. 6. 15.

발 의 자:정필모·고영인·서삼석

전용기 · 윤미향 · 정청래

오영환 • 박홍근 • 임종성

윤재갑 · 한병도 · 노웅래

허 영・이수진(비) 박광온

권인숙 · 김경만 · 박상혁

이상헌 • 조오섭 • 신정훈

김회재 · 문진석 · 전혜숙

안규백・황 희・유정주

이수진 • 유건영 • 홍성국

의원(30인)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수준의 통신망을 구축했다고 평가받아 왔으나, 2018년 11월 통신구 화재사고로 발생한 방송통신재난으로 많은 국민들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고 경제적 피해를 입었음. 특히 5G 등 초연결 통신망은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인프라이고 어떤 환경에서도 끊김 없이 작동되어야 하지만 제20대 국회에서 보완 입법이 마련되지 않았음.

이에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통신시설에 대한 통신사

의 관리의무를 강화하는 등 통신재난에 대한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재 난 상황에서도 국민들이 통신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재난 시 이동통신 로밍제도를 법제화하는 등 통신재난과 관련된 제도 전반을 개선하여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통신시설의 등급지정, 주요통 신사업자의 통신재난관리계획의 이행에 대한 지도·점검, 방송통신 설비의 통합운용,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하도록 함(안 제35조의2 신설).
- 나. 통신시설의 등급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주요통신사업자가 우회통신경로의 확보, 통신시설에 대한 출입제한조치, 재난대응 전 담인력의 운용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통신시설을 관리하도록 함(안 제35조의3 신설).
- 다. 주요방송통신사업자가 수립지침에 따르지 아니하고 방송통신재난 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 가 보완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제3항 신설 등).
- 라.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통신사업자가 무선통신시설의 공 동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 족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동통신사업자가 다른 이 동통신사업자에게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을 허용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의2 신설).

- 마.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 등이 일정규모 이상인 주요통신사업 자가 통신재난관리 전담부서 또는 전담인력을 운영하도록 함(안 제 39조의2 신설).
- 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제36조의2제2항의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의 이행에 대한 시정명령을 위반한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의4 신설).
- 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통신시설 등급지정 및 관리상태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요통신사업자에게 설비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설비 상황, 설비 관련 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제1항제3호 신설).
- 아. 통신시설의 등급지정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통신시설을 법 상 기준에 맞게 관리하지 않는 등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제1항제3호 등).

법률 제 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 및 제3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① 통신재난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제35조에 따른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중 통신 분야에 관한 사항
- 2. 제35조의3에 따른 통신시설의 등급지정에 관한 사항
- 3. 제3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제36조의2에 따른 방송통 신재난관리계획의 이행에 대한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 4. 제37조에 따른 방송통신설비(통신설비로 한정한다)의 통합운용에 관한 사항
- 5. 제37조의2에 따른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등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통신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3(통신시설의 등급지정) ① 제3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

업자(이하 "주요통신사업자"라 한다)는 통신설비를 안전하게 설치· 운영·관리하기 위한 건축물, 통신구 및 기타 구조물(이하 "통신시 설"이라 한다)의 기능 및 회선 수 등 통신장애 시 파급효과 등을 고 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각 통신시설의 등급을 분 류하고 이를 그 근거자료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등급분류와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신시설의 등급을 지정한다.
- ③ 주요통신사업자는 우회통신경로의 확보, 통신시설에 대한 출입제한조치, 안정적 전원공급, 재난대응 전담인력의 운용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통신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급지정의 절차 및 방법, 자료제출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제3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 을 "제6항"으로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주요방송통신사업

자가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에 따르지 아니하고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제37조의 제목 "(방송통신재난의 대비)"를 "(방송통신설비의 통합 운용)"으로 한다.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7조의2(재난 시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등) ① 이동통신서비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이동통신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공하는 주요통신사업 자는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가 방송통신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다른 이동통신사업자와 협정체결, 시스템 구축 등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동통신사업자가 다른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을 허용하도록 명할 수 있다.
 -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라 경계 이상의 방송통 신재난 경보가 발령된 경우
 - 2. 방송통신재난으로 이동통신서비스의 장애가 발생한 이동통신사업 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하는 경우
 - ③ 제2항에 따른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대가는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을 허용한 이동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에

따라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의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와 체결한 해당연도의 도매제공 대가를 기준으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대가와 관련하여 이동통신사업자 간 별도의 협정이 있을 경우 이를 따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9조의2의 제목 "(방송통신재난관리책임자의 지정)"을 "(방송통신재 난관리책임자의 지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 항) 중 "방송통신재난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과 그 밖의 지정에"를 "제 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송통신재난관리책임자의 자격 요건과 지정 전담부서 또는 전담인력의 운용에"로 한다.

② 전년도 전기통신역무(「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주요통신사업자는 통신재난관리 전담부서 또는 전담인력을 운용하여야 한다.

제6장에 제4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4(과징금)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 36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주요방송통신사업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요방송통신사업자가 매출액 산정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면 해당 방송통신사업자 및 동종 유사 서비스 제공 사업자의 재무제표 등회계 자료와 가입자 수 및 이용요금 등 영업 현황 자료에 근거하여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 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 또는 비용절감의 규모
- 4. 위반행위를 한 주요방송통신사업자의 방송통신서비스 매출액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과징금을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과징금의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과징금 및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⑤ 법원 판결 등의 사유로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낸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한 과징금에서 새로 부과하기로 결정한 과징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통신시설의 등급지정 및 관리상태의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3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1호) 중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제36조제3항에 따른 보완명령"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 2. 제35조의3제3항의 기준에 따라 통신시설을 관리하지 아니한 자
- 4. 제37조의2제2항에 따른 명령에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5. 제3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통신재난관리 전담부서 또는 전담인 력을 운용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적용례) 제36조, 제40조의4 및 제48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35조의2(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
	회) ① 통신재난관리에 관한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
	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통
	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5조에 따른 방송통신재
	난관리기본계획 중 통신 분
	야에 관한 사항
	2. 제35조의3에 따른 통신시설
	의 등급지정에 관한 사항
	3. 제3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
	는 사업자의 제36조의2에 따
	른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의
	이행에 대한 지도 · 점검에
	<u>관한 사항</u>
	4. 제37조에 따른 방송통신설
	비(통신설비로 한정한다)의
	통합운용에 관한 사항
	5. 제37조의2에 따른 무선통신
	시설의 공동이용 등에 관한
	<u>사항</u>
	6. 그 밖에 통신재난관리를 위
	하여 필요한 사항

<신 설>

②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35조의3(통신시설의 등급지정)
① 제3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주요통신사업자"라 한다)는 통신설비를 안전하게 설치·운영·관리하기 위한 건축물, 통신구 및 기타 구조물(이하 "통신시설"이라 한다)의 기능, 회선 수 등 통신장에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가 통신시설의 등급을 분류하고이를 그 근거자료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등급분류 와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심의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신시설의 등급을 지정한다.
- ③ 주요통신사업자는 우회통신 경로의 확보, 통신시설에 대한 출입제한조치, 안정적 전원공 급, 재난대응 전담인력의 운용

제36조(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 획의 수립절차) ①·②(생 략)

<신 설>

- ③ (생 략)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수립한 방송통신재난관리기 본계획 중 주요방송통신사업자 와 관련된 사항을 해당 주요방 송통신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생략)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통신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등급지정의 절 차 및 방법, 자료제출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36조(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 획의 수립절차) ①·② (현행과 같음)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주요방송통 신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수립 지침에 따르지 아니하고 방송통 신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보완을 명할 수 있다.
-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 <u>⑤</u> -----
- ----<u>제4항</u>----
- _____
- _____
- ----
-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③ (생 략) <신 설>

제6항-----제37조(방송통신재난의 대비) ① 제37조(방송통신설비의 통합 운 용)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37조의2(재난 시 무선통신시설 의 공동이용 등) ① 이동통신서 비스(「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이동통신서비스 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공하 는 주요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가 방송통신재난 이 발생한 경우에도 이동통신서 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다 른 이동통신사업자와 협정 체 결, 시스템 구축 등 무선통신시 설의 공동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 하는 경우 이동통신사업자가 다 른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무선통 신시설의 공동이용을 허용하도 록 명할 수 있다.
-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법」 제38조에 따라 경계 이 상의 방송통신재난 경보가 발령된 경우

- 2. 방송통신재난으로 이동통신 서비스의 장애가 발생한 이 동통신사업자가 과학기술정 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하는 경우
- ③ 제2항에 따른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대가는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을 허용한 이동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에 따라 다른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의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의 전기통신사업업과를 말한다)와 체결한 해당연도의 도매제공 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대가와 관련하여 이동통신사업자 간 별도의 협정이 있을 경우이를 따른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

제39조의2<u>(방송통신재난관리책임</u> <u>자의 지정)</u> ① (생 략) <u><신 설></u>

② 방송통신재난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과 그 밖의 지정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신 설>

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9조의2(방송통신재난관리책임
자의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전년도 전기통신역무(「전기
통신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주요통신사업자는 통신
재난관리 전담부서 또는 전담인
력을 운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송통신재난관리책 임자의 자격요건과 지정 전담부 서 또는 전담인력의 운용에---

제40조의4(과징금) ① 과학기술정 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 회는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시 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주요방 송통신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 으로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요방송통신사업자가 매출액

산정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면 해당 방 송통신사업자 및 동종 유사 서 비스 제공 사업자의 재무제표 등 회계 자료와 가입자 수 및 이용요금 등 영업 현황 자료에 근거하여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 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야 한다.
-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 또는 비용절감의 규모
- 4. 위반행위를 한 주요방송통

 신사업자의 방송통신서비스

 매출액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과징금을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

하여 체납된 과징금의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못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된기간에 과징금 및 제3항에 따른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⑤ 법원 판결 등의 사유로 제1 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환 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낸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 에 대하여 금융회사 등의 예금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 산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의판결에 의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그 판결이유에 따

제43조(보고ㆍ검사 등) ① 과학기 저 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방송통신설비를 설치한 자 에게 그 설비에 관한 보고를 하 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 여금 그 사무소, 영업소, 공장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설비 상황, 설비 관련 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 2. (생략)

<u><신</u>설>

② ~ ④ (생 략) 제4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제48조(과태료) ① -----

	라 새로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한 과징금에
	서 새로 부과하기로 결정한 과
	징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환급가산금을 계산하
	여 지급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1)	43조(보고·검사 등) ①
	1. · 2. (현행과 같음)
	3. 통신시설의 등급지정 및 관
	리상태의 적정성 확인을 위

- 하여 필요한 경우
- ② ~ ④ (현행과 같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

<신 설>

<신 설>

1.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신 설>

<신 설>

2. (생략)

②·③ (생 략)

----.

- 1.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 2.
 제35조의3제3항의
 기준에

 따라
 통신시설을
 관리하지

 아니한
 자
- 3. <u>제36조제3항에 따른 보완명</u> 령-----
- 4. 제37조의2제2항에 따른 명령에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 5. 제3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통신재난관리 전담부서 또는 전담인력을 운용하지 아니한 자
- 6. (현행 제2호와 같음)
- ② · ③ (현행과 같음)